

제418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5. 4. 23. ~ 5.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제 418회 임시회

(2025. 4. 23. ~ 5. 7.)

# 제418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12.3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민심의 횃불은 강력한 열기로 뿔어내며 세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번 내란행위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동시에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숙제 또한 위대한 전북도민과 국민들이 풀어낼 것입니다.

조기대선을 통해 소외됐던 전북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또한 파탄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제418회 임시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꼼꼼한 심사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그늘진 민생경제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 뜻을 모았습니다. 도 집행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연대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번에 확정되는 추경안이 바닥을 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도심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산업단지 확정과 도로망 확충, 철도 건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기대선을 전북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북의 핵심산업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도록 대선공약 반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집약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각 정당과 대선후보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도 힘껏 돕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학력신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의 지적능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독서, 인문교육은 특히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는 물론 존중과 배려의 문화 다양성 교육은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삶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의 안전관리 강화도 중요합니다.

늘봄학교의 늘봄지킴이 확대와 현장체험학습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보조인력을 반드시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을 갖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합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에게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 실현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기를 바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 목 차

## 제418회 임시회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7
2. 회기 및 운영 .....	7
3. 의 사 일 정 .....	8

###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13
2. 처 리 현 황 .....	14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52
2. 처 리 현 황 .....	52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53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54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54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55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55

# I. 집회 및 의사일정

##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5. 4. 16.(수)
- 집회 일자 : 2025. 4. 23.(수) 14:00
- 집회 사유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전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5. 4. 23. ~ 5. 7.(15일간, 2025년 : 37일, 총누계 371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연 누계 : 8, 총 누계 78)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방	교 육	특 별
제418회 임사회	19	1	3	3	2	4	3	3
2025 년도	52	3	9	10	8	11	8	3
총 누 계	159	10	29	28	26	29	26	11

### 3. 의사일정

####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4.23.(수) 14:00	<p><b>〈 제1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식</li> <li>○ 5분 자유발언(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수 의원, 임승식 의원, 임종명 의원, 박정규 의원, 전용태 의원, 김슬지 의원, 오은미 의원, 김만기 의원, 박용근 의원, 윤수봉 의원</li> </ul> </li> <li>1.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li> <li>2.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li> <li>3.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li> <li>5.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li> <li>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li> <li>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li> <li>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li> <li>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li> <li>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li> <li>11.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li> <li>12.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li> <li>13. 본회의 휴회의 건</li> </ul>	
5. 7.(수) 14:00	<p><b>〈 제2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주영은 의원, 김동구 의원, 김희수 의원, 윤정훈 의원, 강태창 의원, 오현숙 의원, 김대중 의원, 이명연 의원, 윤영숙 의원, 염영선 의원</li> </ul> </li> <li>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li> <li>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3.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li> <li>7.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8.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9.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li> <li>10.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li> <li>13.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li> <li>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li> <li>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li> <li>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li> <li>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li> <li>2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2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li> <li>2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li> <li>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li> <li>2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li> <li>27.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li> <li>28.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li> </ul>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4. 23.(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li> <li>○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 의회사무처</li> </ul>	
기획행정 위원회	4.24.(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li> <li>-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대외국제소통국</li> <li>○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기획조정실 예산심사 후)</li> <li>-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심사(대외국제소통국 예산심사 후)</li> <li>-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4.25.(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li> <li>-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자치행정국</li> <li>○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특별자치교육협력국 예산심사 후)</li> <li>-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li> <li>○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자치행정국 예산심사 후)</li> <li>-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li> <li>-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수조정</li> </ul>	
	4.28.(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의정활동</li> <li>-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li> </ul>	
농업복지 환경 위원회	4.23.(수) 11: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li> <li>○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심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li> </ul>	
	4.24.(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li> <li>-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li> <li>- 복지여성보건국 소관</li> </ul>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4.25.(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li> <li>- 환경산림국 소관</li> <li>- 농업기술원 소관</li> <li>- 계수조정</li> </ul>	
경제산업 건설 위원회	4.24.(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li>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li> <li>○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심사</li>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 지원 조례안</li> </ul>	
	4.25.(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 심사</li>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새만금해양수산물국 소관 의안 심사</li>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 계수조정 및 의결</li> </ul>	
문화안전 소방 위원회	4. 23.(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ul>	
	4.24.(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li> <li>- 문화체육관광국 소관</li> <li>-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li> </ul>	
	4.25.(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li> <li>- 도민안전실 소관</li> <li>- 소방본부 소관</li> <li>- 계수조정</li> </ul>	
	4.28.(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의정활동</li> <li>-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게임센터</li> </ul>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교육위원회	4.24.(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질의(부교육감)</li> <li>○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li> </ul> </li> <li>○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li> </ul>	
	4.25.(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심사(정책국, 대변인)</li> <li>○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심사(행정국, 감사관)</li> </ul>	
	4.28.(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직속기관)</li> <li>○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교육지원청)</li> <li>○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li> </ul>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29.(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li> <li>- 제안자 : 경제부지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li> </ul> </li> <li>○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복지여성보건국, 미래첨단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li> </ul> </li> </ul>	
	4.30.(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li> </ul> </li> <li>○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li> </ul> </li> </ul>	
	5.1.(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li> <li>- 제안자 : 부교육감</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인·정책국</li> <li>- 감사관·행정국</li> </ul> </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li> <li>- 직속기관</li> <li>- 교육지원청</li> </ul> </li> <li>○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등</li> <li>○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li> </ul>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18회 (2025. 5. 7.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35	19	10	9			3	5	6	2		
	누 계	1453	705	338	360	7	7	0	364	57	237	83	
의 회	소계	금회	21	13	9	4					6	2	
		누계	871	546	314	227	5	7	0	5	0	237	76
	의원	금회	21	13	9	4					6	2	
		누계	834	536	312	219	5	0	0	0	0	234	64
	위원회	금회											
		누계	37	10	2	8	0	7	0	5	0	3	12
도지사	금 회	8	3		3			3	2				
	누 계	445	97	15	82	0	0	0	321	23	0	4	
교육감	금 회	6	3	1	2				3				
	누 계	137	62	9	51	2	0	0	38	34	0	3	

## 2. 처리현황

### ○ 총 괄

제418회 (2025. 5. 7.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35	35	34			1				
	누계	1453	1443	1309	83	0	24	0	25	16	
조 례 안	소계	금회	19	19	18			1			
		누계	705	700	634	41	0	6	0	17	7
	의회	금회	13	13	13						
		누계	546	542	496	31	0	0	0	13	6
	도지사	금회	3	3	3						
		누계	97	97	84	6	0	3	0	4	0
	교육감	금회	3	3	2			1			
		누계	62	61	54	4	0	3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3	3	3							
	누계	363	363	313	25	0	18	0	7	0	
예산결산안	금회	5	5	5							
	누계	58	58	43	15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6	6	6							
	누계	237	232	229	2	0	0	0	1	9	
기 타 의 안	금회	2	2	2							
	누계	83	83	83	0	0	0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27	19			3	5			27	24	2	1			
	누 계	1142	695	0	0	359	57	24	7	1132	995	85	24	22	0	17
의회 운영 위 원 회	금 회															
	누 계	41	17	0	0	0	0	24	0	36	30	4	0	0	0	7
기획 행정 위 원 회	금 회	6	6							6	6					
	누 계	216	157	0	0	58	0	0	1	214	200	8	0	6	0	3
농업 복지 환 경 위 원 회	금 회	3	1			2				3	3					
	누 계	201	147	0	0	54	0	0	0	201	184	2	3	11	0	1
경제 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 회	5	4			1				5	5					
	누 계	282	120	0	0	159	0	0	3	282	242	21	15	3	0	1
문화 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 회	1	1							1	1					
	누 계	149	99	0	0	50	0	0	0	148	135	8	3	2	0	1
교 육 위 원 회	금 회	7	7							7	6		1			
	누 계	196	155	0	0	38	0	0	3	194	164	25	3	0	0	4
특 별 위 원 회	금 회	5					5			5	3	2				
	누 계	57	0	0	0	0	57	0	0	57	40	17	0	0	0	0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8					6	2	8	8					
	누계	312	10	7	0	5	0	210	77	312	311	0	0	1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4	18			3	5	6	2	34	32	2				
	누계	1386	674	8	0	338	57	226	83	1404	1301	85	13	5	0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 주요내용

-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업비 출연
  - : 1개 사업 1,300백만원(도비)
  - ①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 1,300백만원  
(도비1,300, 자부담 270)
    - (목적) 급변하는 제조산업 생태계 변화에 속도감 있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 (효과) 뿌리기업 생산공정 자동화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을 통해전북특별 자치도 뿌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생태계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5호

□ 제안이유

- 2036년 하계올림픽 본격 유치 및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 구

- 1) 본 청 : 3실·10국·1본부66과 272팀 → 3실·10국·1단·1본부69과 284팀+1국 +3과 +12팀
- 2) 의 회 : 1처 4담당관 9전문위원(변동없음)
- 3) 직 속 : 3원 15서 1관(변동없음)
- 4) 사업소 : 11사업소(변동없음)
- 5) 합의제행정기관 : 2국 2과 11팀 → 2국 2과 12팀(감사위원회 +1팀)

나. 정 원

- 1) 전북특별자치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변동 내역(안 제81조)
  - 가) 정원의 총수 : 5,497명 → 5,534명, +37명
  - 나)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5,497명	5,534명	37명	
집행기관의 정원	1,852명	1,887명	35명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3,456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124명	124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1명	63명	2명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4명	-	

##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6호

□ 제안이유

- 2025년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개선 의견 등을 반영·정비하여 차기 금고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제4조 별표)
  - (항목추가)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4점)
  - (배점하향) 유동성커버리지비율(1→0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5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6점)
  - (항목변경)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 →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7호

□ 제안이유

-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 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

□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기한 3년 연장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나.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소형주택 공급 확대(안 제3조)
    - 취득세 25% 추가 감면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안 제3조의2)
    - 취득세 25% 추가 감면
  - 인구감소지역(안 제3조의3)
    - 취득세 25% 추가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90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사후평가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교육갈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됨(안 제4조)
-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함(안 제8조제2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내역 변경(안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원: 4,130명 ⇒ 4,129명(1명 감원)
  - 교육전문직원 정원: 468명 ⇒ 469명(1명 증원)
-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현행		개정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율	50% 이내	50% 이상	50% 이내	50%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91호

□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따라 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요건 등의 근거 마련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 도모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함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안 제6조)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의 증가된 재원을 기반으로, 추가로 필요한 교육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예산안 규모

-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b>합 계</b>	<b>4,723,880,381</b>	<b>4,573,235,713</b>	<b>150,644,668</b>
이 전 수 입	4,235,391,401	4,184,718,768	50,672,633
자 체 수 입	32,361,235	27,723,145	4,638,090
기 타	38,127,745	40,793,800	△2,666,055
내 부 거 래	418,000,000	320,000,000	98,000,000

-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b>합 계</b>	<b>4,723,880,381</b>	<b>4,573,235,713</b>	<b>150,644,668</b>
유아및초중등교육	2,263,520,344	2,142,877,375	120,642,969
평 생 교 육	13,535,244	10,837,212	2,698,032
교 육 일 반	197,673,449	192,698,586	4,974,863
예 비 비	14,624,537	25,985,876	△11,361,339
인 건 비	2,234,526,807	2,200,836,664	33,690,143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통합교육 재정안정화기금	264,826,800	11,634,716	53,000,000	223,461,516	0	223,461,516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천원)

구 분	'25년도말 구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구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e)	총 구성규모 (f=d+e)
		구성계획 (b)	집행계획 (c)			
변경액 <sup>㉑</sup>	430,496,910	21,976,898	365,000,000	87,473,808	0	87,473,808
기정액 <sup>㉒</sup>	430,496,910	21,976,898	300,000,000	152,473,808	0	152,473,808
증감 <sup>㉑-㉒</sup>	0	0	65,000,000	△65,000,000	0	△65,000,000

##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4.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5호

□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정의된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라 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자원봉사 관리분야가 선정되고,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자원봉사관리원”으로 표기됨에 따라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저변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조정(안 제6조의2)
- 다.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신설(안 제13조)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나인권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2호

□ 제안이유

- 도내 이전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선지급 지원 특례를 신설하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관련 용어 삭제(안 제2조)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24.12.6.)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금융기관” 관련 정의 조항을 삭제

나. 선지급 특례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 삭제(안 제11조, 제39조)

- 본 조례 전부개정( '24.5.31.)시 선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 제11조(신·증설 투자 지원)에 타당성평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도내 이전기업(제12조) 및 대규모 투자기업(제13조)도 선지급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39조(지원특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괄 명시

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조문 삭제(안 제44조)

- 투자완료 후에는 별도 정산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이를 규정한 해당 조문 정비(제44조)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1호

□ 제안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한정운수면허의 신청·허가, 사업계획의 변경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플랫폼, 자율주행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마.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재정지원 및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사. 시범운행지구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자율주행 협력센터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 의원 (찬성의원 15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4호

제안이유

○ 도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나.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비용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

##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박정규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9호

□ 제안이유

- 최근 야영 인구가 급증하고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우수야영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야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자. 야영장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8호

제안이유

-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운영을 명시(안 제1조~제2조)
- 나. 마을세무사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 근거를 규정(안 제4조)
- 라. 세무상담 대상, 상담방법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마. 마을세무사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바. 마을세무사 수당, 표창·우대지원 등을 규정(안 제9조~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김동구·김이재 김만기·임종명·이병도 나인권·서난이 의원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3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항공교통 기체 안전 및 효율적인 운항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심항공교통 및 도심항공교통산업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안 제3조, 제4조)
- 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도심항공교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윤정훈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9.	공 포 번 호	제577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농업기계화 촉진·확대 등에 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 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제 출 자	윤정훈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6호

### □ 제안이유

-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함.
-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대상 기록물의 이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대상 기록물의 수집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사.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아.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7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마사토 운동장, 탄성포장재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음.
-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지만, 조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지면서 유해성 물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임. 특히,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함. 또한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
- 이에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운동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제 출 자	전용대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8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사.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아. 협의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5조)
- 자.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9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록물 생산량 증가로 문서고 공간 부족과 일부 학교의 기록물 관리 소홀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록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신설 규정함(안 제3조의2)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함
- 나. 기존에 민간위탁사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종료하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기능인 생생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활성화 업무 및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센터 시설 관리 업무를 포함한 신규 민간위탁(시설+사무)하고자 함
- 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 규 모 : 대지면적 26,805㎡/ 연면적 2,958.23㎡/ 건축면적 977.79㎡
  - 시설현황(지하1층/지상4층)
    - 운영 사무실, 강의실 5개, 대회의실, 소회의실, 숙박공간, 휴게공간 등
    - 주차 대수 : 37대

층 수	면 적	공간 구성
지상4층	517.07	숙박공간(17명 수용), 다용도실
지상3층	518.5	유관기관 임대사무실, 옥상정원
지상2층	855.78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의실(5개소)
지상1층	752.36	운영사무실, 카페테리아, 메인로비
지하1층	314.52	기계실, 전기실, 휴게공간, 창고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과 민간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
-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6개월(2025. 7. ~ 12.)
  - 사무내용
    -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 인증 지원 등)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25년 소요예산 : 72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인건비, 운영비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 절차를 통해 모집 후 평가위원회\* 거쳐 선정
- \* 평가위원회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담당자 포함하여 구성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15조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0호	

□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각·청각장애인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체로 개정하고, 현재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정함(안 제5조제2항)
- 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1조)
- 라. 교육 대상자를 모든 운수종사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로 구체화하고 각 운수종사자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5. 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75,010,499	302,250,315
일 반 회	계	9,000,471,447	270,014,143
특 별 회	계	1,074,539,052	32,236,172
기 타 특 별 회	계	1,074,539,052	32,236,172
	의 료 급 여 기 금	620,987,331	18,629,620
	동 부 권	36,150,000	1,084,50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6,061,000	181,830
	소 방	410,464,091	12,313,923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876,630	26,299

- 세부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5. 1.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동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사유 발생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10,081,151,299	10,075,010,499	6,140,800
일반회계	9,006,612,247	9,000,471,447	6,140,800
특별회계	1,074,539,052	1,074,539,052	-
기타특별회계	1,074,539,052	1,074,539,052	-
의료급여기금	620,987,331	620,987,331	-
동부권	36,150,000	36,150,000	-
학교용지부담금	6,061,000	6,061,000	-
소방	410,464,091	410,464,091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876,630	876,630	-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5. 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결산 반영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전입금 증가 등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 총괄(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당초계획(C)	1,091,536,256 (1,072,636,256)	232,977,713 (211,764,497)	262,519,194 (255,405,978)	△29,541,481 (△43,641,481)	1,061,994,775 (1,028,994,775)	
변경계획(D)	1,108,352,834 (1,089,452,834)	237,524,593 (216,311,377)	271,662,462 (264,549,246)	△34,137,869 (△48,237,869)	1,074,214,965 (1,041,214,965)	
증 감(D-C)	16,816,578 (16,816,578)	4,546,880 (4,546,880)	△9,143,268 (△9,143,268)	△4,596,388 △4,596,388	12,220,190 (12,220,190)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의장		제 출 일 자	2025. 4.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의장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근거법령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임 기 : 위원 선임 시점으로부터 1년

위 원 수 : 11명

위원 선임(안)

(상임위원 가나다순)

연번	소속 상임위원회	의 원 명	비 고
1	기획행정위원회	김 슬 지	
2	기획행정위원회	염 영 선	
3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 요 안	
4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 승 식	
5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 인 권	
6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 성 수	
7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 용 근	
8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 정 규	
9	교육위원회	윤 수 봉	
10	교육위원회	윤 정 훈	
11	교육위원회	전 용 태	

##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LMO) 감자(SPS-Y9)에 대해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심사 후 ‘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상태로 정부는 유전자변형 감자의 수입 승인 절차를 대부분 완료함.
- 유전자변형 감자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롯사가 2018년 4월에 수입 승인을 신청한 감자로 당시 농민들과 국민의 반대로 수입이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감자로 수입이 최종 승인된다면 감자튀김 등 가공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돼 국민 식탁의 안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
- 또한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유전자변형 감자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 건강권, 농업 주권, 식량 안보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LMO) 감자의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수·박정규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4.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및 건강관리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위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추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퇴직 후에도 다양한 질병에 시달릴 우려가 큼에 따라,
-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며,
- 아울러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임.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권요안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5. 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이에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 간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 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음.
-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이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농업인들은 특수건강검진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작업의 핵심 인력인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모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권요안·임승식 김정수·이정린·오현숙 오은미·김대중·이명연 의원		제 출 일 자	2025. 5. 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금융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커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하여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보다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음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산업 발전과 디지털 금융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안번호 1452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이정린·임승식·권요안 오현숙·김정수·국주영은 오은미·황영석·임종명 의원		제 출 일 자	2025. 5. 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윤석열 정권에서 의정 갈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체계 취약점이 드러나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 이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임. 공공의대법안은 당론 법안으로,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고자 함.

##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5.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지난 5월 1일 대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하였음
-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만에, 두 차례 심리만으로 판결했으며 파기환송 심마저 속도를 내고 있음.
-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사법부발 내란이자 검사와 판사 동일체의 반란이라고 여겨짐.
- 이에 130여년 전 탐관오리의 불의에 맞서 '보국안민' 기치로 죽창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 후예임을 자부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하는 바임.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5. 4.4.~2025. 5.7.)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의지	환경	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농축수산	교통	도시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회	13		2				1	1	1			1		7
2025년누계	19	1	2				5	1	1			1		8

○ 제출자별

구분	계	인원별					기관단체
		소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회	13	13	13				
2025년누계	19	18	18				1

####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리별					처리중
		소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이송	
금회	13	13	10		3		
2025년누계	19	19	16		3		

###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5. 5. 7.)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까지	소 계	<b>251</b>	<b>251</b>	<b>251</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3	13	13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1	11	11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13	13	13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5	15	15			
	교육위원회	70	70	70			
	기 타	129	129	129			
금회	소 계	<b>13</b>	<b>13</b>	<b>13</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	1	1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2	2	2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	1	1			
	교육위원회	2	2	2			
	기 타	7	7	7			
누계	소 계	<b>264</b>	<b>264</b>	<b>264</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3	13	13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2	12	12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15	15	15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6	16	16			
	교육위원회	72	72	72			
	기 타	136	136	136			

##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5.4.23.~2025.5.7.)

기관별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회	48	48		100
누계		848	848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33	33		100	
	누계	638	638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회	15	15		100	
	누계	210	210		100	

###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5.4.23.~2025.5.7.)

기관별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회	48	14	3	15	5	6	-
누계		848	199	125	162	202	131	-	29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33	13	2	10	3	2	-	3
	누계	638	178	94	136	171	38	-	21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회	15	1	1	5	2	4	-	2
	누계	210	21	31	26	31	93	-	8

### 3. 제12대의회의원요구및제출현황(횟수별)

(2022.7.1.~2025.5.7.)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고
합계	1,953	1,953		
전북특별자치도	1,482	1,48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71	471		

### 4. 제12대의회위원회별요구상황(횟수별)

(2022.7.1.~2025.5.7.)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1,953	410	371	380	394	347	2	49
전북특별 자치도	1,482	362	294	334	351	104	2	35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471	48	77	46	43	243	-	14

### 5. 제12대의회위원회별요구상황(건수별)

(2022.7.1.~2025.5.7.)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4,458	975	854	858	1,015	697	4	55
전북특별 자치도	3,524	892	696	753	945	193	4	41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934	83	158	105	70	504	-	14